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723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8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신규 마을버스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마을버스 등의 도입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마을버스 운행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확실한 안정성 검증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모델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당 현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 골자

- 가. “휠체어 탑승설비”를 “기타 안전 설비”로 수정함(안 제10조제7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7항 중 “휠체어 탑승설비”를 “기타 안전 설비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안(교통위원회안)
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생 략) <신 설>	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생 략) ⑦ 시장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 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생 략) ⑦ ----- ----- ----- 기타 안전 설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시장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 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0조(시장의 책무) ① ~ ⑥ (생략) <u>⑦ 시장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신규 마을버스로 저상버스 및 기타 안전 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</u>